



한의학의 미래, 의료의 미래 서울특별시한의사회

Seoul Korean Medicine Association

수 신 분회장

(경유) (사무국장)

제 목 민간단체의 협약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소개·알선·유인 행위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

1. 한의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대한의-2025-030-0075(2025.3.12.)

3. 보건복지부는 2024년 국정감사 시, '복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협약 의료기관으로부터 기부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, 바우처 등 형태로 본인부담금 할인·면제를 내세우며 협약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소개·알선·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필요성 지적'으로 중앙회에 다음 사항을 알려온 바, 귀 분회 소속 회원분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다 음 >

- 「의료법」제27조제3항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·알선·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
- 사업 대상자가 진료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명목적으로 납부한다하더라도 환자나 의료기관이 바우처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진료비를 환급하게 됨으로써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나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, 민간단체가 특정 조건하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·제휴하고 의료 바우처 대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(협약 의료기관)에 환자를 소개·알선하는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.

※ 상기 사례 파악 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또는 관할 보건소 신고 요망. 끝.

서울특별시한의사회



국장 윤상환

처장 김태준

협조

서한의 - 제 460 호 (2025.03.12.)

우)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6 테헤란오피스빌딩 206 / 홈페이지 : <https://www.skma.or.kr>

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: (대)02-960-0811 / 팩스 02-6944-8075 / E-mail : skma@skma.or.kr